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성일종 · 강명구
김 건 · 이종배 · 김선교
조경태 · 서지영 · 송석준
이양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,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(이하 “생활권공원”)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특히,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, 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·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) ① 특별시장

· 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

또는 군수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
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활권
공원에 관한 정비계획(이하 “생활권공원 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
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
함되어야 한다.

1. 노후 공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
2. 공원시설의 배치 등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
3. 보행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생활권공원의 안전관리 및 이용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사
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특별시장 · 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
지사 · 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

리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)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2에 따른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) ①</u>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(이하 “생활권공원 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노후 공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</u> <u>2. 공원시설의 재배치 등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</u> <u>3. 보행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생활권공원의 안전 관리 및 이용편의성 제고에</u>

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
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
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
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
는 경우 미리 생활권공원의 이
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
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
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
태에 관한 조사에는 이용자 만
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
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정한 사항 외에 생활권공원 정
비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
사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